

대전광역시 중구

구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74호
2023. 9. 12.(화)

차 례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2

안 내 문

- 공보의 게재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 중구공보 발행일 : 매주 금요일(전자공보) ◎ 공보문건 접수마감 : 매주 목요일
 - ※ **금요일이 휴일일 경우는 목요일에 발행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다음호에 게재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특별한 문건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문건은 게재할 수 없으니 각 실·과·소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 고시공고에 등재 후 시행문은 전자결재로 기획홍보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보는 전자공보로 구 홈페이지(민원·행정·행정자료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설직 지적직류 응시자격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개정 따라 근무경력 가산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험실시일 전 응시의사 철회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함.(안 제6조의2 제2항제4호).
- 나.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대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의2).
- 다. 교류직위, 전문직위 및 재난·안전관리 담당자 근무경력가산점 부여 규정을 신설함 (안 제25조의4).
- 라. 시설직렬 지적직류 응시요건(자격증) 정비(안 별표 4).
- 마.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 정비에 공모사업 예산확보 기여 항목을 신설 하고 예산절감 기여 항목을 폐지함(안 별표 15의3).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총무과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042-606-6192), FAX(042-606-7912),

E-Mail(justicekjh@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총무과 담당자 강재황(전화: 042-606-61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제12조제4항 중 “사제지간 등)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근무경력 가산점) ①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총 가산점은 0.48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3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4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5점

③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별표 4, 별표 15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계급		
직렬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계급		
직렬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산업기사(항공)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산업기사(항공)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기사(지적)	기술사(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지적)	기술사(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지적)기능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제25조의2 관련)

가점 항목	구분	부여 기준	배 점	산정 방법
1. 업무창안 및 개선	1-1. 담당업무관련 중앙제안 채택 시	- 금 상 - 은 상 - 동 상 - 장려 상 - 노력 상	1.5점 1.0점 0.8점 0.5점 0.2점	◦주제안자만 인정하되, 공동 제안자가 있을 경우 동일한 점수로 인정 - 제안 실행자는 배점의 1/2 인정 - 제안에 따른 특별승진자는 가점 제외
	1-2. 담당업무관련 시·區제안 채택 시	- 금 상(시/구) - 은 상(시/구) - 동 상(시/구) - 장려 상(시/구) - 노력 상(시/구)	0.7/0.5점 0.5/0.3점 0.4/0.2점 0.3/0.1점 0.2/ 점	◦주제안자만 인정하되, 공동 제안자가 있을 경우 동일한 점수로 인정 - 제안 실행자는 배점의 1/2인정 - 제안에 따른 특별승진자는 가점제외
2. 업무추진 우수	2-1. 全國(中央)단위 소관업무평가 결과 기관포상을 받은 경우	- 대통령(최우수/우수) - 총 리(최우수/우수) - 장 관(최우수/우수)	1.0/0.8점 0.8/0.6점 0.6/0.4점	◦해당 업무 1년 이상 근무하고 수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관계자 1명 해당하되, - 해당 업무 1년 미만인 경우는 1/2인정 - 기관포상에 따른 개인유공 표창이 있는 경우는 그 직원을 추천하여야 함 ◦관행적인 표창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업무 평가 결과에 한함
	2-2. 시 업무평가 결과 기관포상을 받은 경우	- 최우수 - 우수	0.4점 0.2점	
	2-3. 격무업무 담당 및 담당자로 실적가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0.2점	◦격무업무 및 대상인원에 대하여는 필요 시 설문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선정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함
	2-4. 적극행정, 구정 우수시책 발굴 추진 등 업무추진에 크게 기여		0.5점 이내	◦추진부서(기획홍보실)에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명단통보 ◦업무추진에 직접 기여한 실질적 기여자 2명까지 인정
	2-5. 우리구 특별과제, 현안사항, 현장행정 등 업무추진에 탁월하게 기여하여 평정단위별 확인자가 업무추진 우수자로 추천, 실적가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0.5점 이내	◦업무추진에 직접 기여한 2명까지 인정 -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함
3. 예산확보 기여	3-1.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가예산(市비 포함) 확보에 기여한 경우	- 50억이상 - 10억~50억원 미만 - 1억~10억미만	15점 이내 1.0점 이내 0.5점 이내	◦ 예산확보에 직접 기여한 2명까지 인정 - 실적가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여야 함
4. 귀감·선행 등	4-1. 선행 또는 사회의 귀감이 되어 언론 보도 및 그에 상응하는 기관에서 인정하여 구정의 위상을 드높인 자		0.3점 이내 (탁월 0.3, 우수 0.2)	◦언론보도 및 기관의 증빙 자료에 한하여, 실적가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여야 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③ (생 략)</p> <p>제12조(시험위원) ① ~ ③ (생 략)</p> <p>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u>사제지간 등</u>)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 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시험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사제지간 등</u>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 (<u>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u>) ----- -----.</p> <p>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p> <p>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 경쟁임용시험등의 <u>점검위원회(이하</u></p>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 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25조의4(근무경력 가산점) ①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방공무원

<신 설>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총 가산점은 0.48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보가 제한
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
점을 부여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3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4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1개월
마다 0.05점

③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
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
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
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
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제15조관련)

직렬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 제작, 도화, 항공 사진, 지적)

[별표 15의3]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제25조의2 관련)

가점 항목	구분	부여 기준	배 점	산 정 방 법
3. 예산절감 기여	3-1. 제도 및 기술의 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의 경우 - 연간 1억원 이상 - 연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연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5점 이내 1.0점 이내 0.5점 이내		○ 예산절감에 직접 기여한 1명에 한하여 인정 - 절감 추산액이 아닌 절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증빙서"를 제출한 경우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제15조관련)

직렬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기능사(지적)

[별표 15의3]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제25조의2 관련)

가점 항목	구분	부여 기준	배 점	산 정 방 법
3. 예산확보 기여	3-1.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기예산 (市비 포함) 확보에 기여한 경우 - 50억이상 - 10억-50억원 미만 - 1억-10억미만	1.5점 이내 1.0점 이내 0.5점 이내		○ 예산확보에 직접 기여한 2명까지 인정 - 실적가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여야 함

관 련 법 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6. 13.>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2.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 및 감점 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제64조(응시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2., 2016. 12. 30., 2023. 6. 13.>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9. 2. 6.]

제6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13.]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 9. 10., 2023. 6. 23.>

1.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② 삭제 <2020. 9. 10.>

③ 삭제 <2020. 9. 10.>

④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3. 6. 23.>

1.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2.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7호, 2023.6.13. 일부개정)

제107조(시험위원의 구성 및 준수사항 등) ⑤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포함한다)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 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2023. 6. 12. 지방인사제도과-4159 개정)

제6조의2 (응시수수료)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5., 2013.12.10., 2016.12.30., 2023.6.13.>

제12조 (시험위원)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1.> <개정 2023.6.13.>

제 14 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 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 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6.13.]